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강원디자인진흥원 카페D뜰)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 근무 직원 후생복지 및 내방객 편의를 위한 카페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10,735,680원(VAT포함)(소상공인인 경우 50% 경감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진흥원이 별도로 손해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 진흥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진흥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진흥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진흥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적의 판단하여 재공고 또는 갱신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진흥원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 진흥원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에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진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우리 진흥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특수조건

(강원디자인진흥원 카페D뜰)

제1조(목적) 본 조건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준칙으로서 사용허가의 부대조건으로 한다.

제2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영업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기타 운영경비 등의 이유로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가격을 정하여 카페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가능품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하여 진흥원 담당자의 검토 및 진흥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판매품목을 정할 수 있다.

1. 커피, 차 종류, 과자류, 빙과류, 음료, 빵류,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식품류
* 국물이 있는 음식 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음식은 판매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승인 영업 판매품목 중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승인한 영업 판매품목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영업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진흥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물품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매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흥원이 판매품목 리스트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 시 즉시 시정한다.

⑤ 진흥원 관계 직원이 점검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⑥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⑦ 모든 판매품은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자에게 손해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진흥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진흥원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 및 실내장식 등을 변경할 수 없으며, 무단 변경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

③ 카페에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카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권을 지체 없이 포기하고 시설(부착물 및 부대시설 포함)의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카페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 설치비용 또는 관리금 명목의 비용을 진흥원이나 차후 사용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에 대하여 진흥원에 일체의 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시설물 설치제한) ① 사용자는 영업상 필요한 홍보용 시설물 등의 규격에 대해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형을 변경하는 시설물이나 광고물을 설치 또는 부착하지 못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판매점 내부 및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시설과 설비 및 진흥원 소유 집기는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훼손할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복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판매점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인의 모든 물품은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진흥원에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협조·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진흥원 위상에 맞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명소조성 및 문화행사 연계 이벤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진흥원의 시설 내에 근무함에 있어서 진흥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진흥원의 시정 및 개선 요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종사원 채용 및 관리) ① 카페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카페 종사원은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카페 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동 고용사항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하는 판매원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카페에 근무하는 자는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항상 단정한 상태로 이용관람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판매원 관리자를 선임하여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판매원의 불친절 또는 근무 불성실을 이유로 진흥원이 해당 판매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이용고객에 대한 약속 사항이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건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위생관리) ① 사용·수익 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카페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청소와 정기적인 소독은 진흥원이 실시하고 사용허가 공간과 물품 등 사용인의 소유물에 대한 청소는 사용자가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목적 수행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등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법규 미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발생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안전 및 책임) ① 사용자는 허가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재산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사용자는 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 화기 및 기타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카페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

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허가조건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흥원 및 이용자에게 손해 등을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사용자는 상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진흥원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가격의 조정

2. 취급 품목 선정 및 조정

3.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4.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디자인진흥원 위상에 맞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명소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카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흥원이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휴게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진흥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진흥원의 시정 및 개선 요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 ①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전기료 등)은 사용량의 측정과 요금의 적정부과를 위하여 설치된 별도의 계량기에 의하거나 시설별 사용량 적정 분배한 계산에 따른다.

② 전항에서 정한 제세공과금은 진흥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카페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유지비(유리 파손, 조명 및 안정기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제세공과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익월에 전월 연체료를 부과하여 고지하고, 연체가 연속 3회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주의 조치 등을 부과하는 등 제20조(재조치)의 절차를 따른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사용자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카페의 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